

#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 7.14(월)

교육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2014. 7. 2.
- 나. 제안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 다. 회부일자 : 2014. 7. 2
- 라. 상정일자 : 2014. 7. 10. (제216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 제안설명 : 행정관리국장 박송철
  - 검토보고 : 교육수석전문위원 한상환
  - 질의 및 토론
  - 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각급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위하여 채용 등 인사·노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나. 주요내용
  -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 근로자의 정원, 채용, 전보, 교육훈련, 복무 등 인사·노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8조)

###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각급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채용 등 인사노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7월 2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 주요검토내용

- 안 제2조(정의)는 동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각급학교”, “공립학교”, “근로자”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법령 해석 및 적용 시 의문점을 없애고 법적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안 제3조(적용범위)는 동 조례안의 적용범위를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로 규정하고 동조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단서조항을 두어 법령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였으나 입법예고 시 동 조항 제4호의 범위가 매우 포괄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는바,

교육청에서는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법령 등으로 학교장이 직접 채용하는 직종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때마다 조례개정을 통해 학교장 채용직종을 정한다면 적시에 근로자를 채용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본 의견을 반영하지 않음”의 답변으로 미반영사유를 제시하였음

이에 대해 동 조례안에서는 근로자의 정의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1호에 근거하고 있어 학교장이 근로자를 채용한다 하더라도 채용직종을 조례개정으로 정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법조항에서 대상을 포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법령의 명확성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바, 적용범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5조(채용)**는 각급기관의 근로자 채용을 교육감이 각급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하고 또한 공채채용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

다만, 동조항 제3호의 “긴급을 요하거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는 조항에 대해 구체적 설명이 필요함.

- **안 제6조(전보)**는 근로자들의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하여 각급기간 간 전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사항으로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만, 근무 기관의 정원 감소, 같은 기관에서 장기간 근무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으로 근로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부득이 전보를 시행해야 할 경우 근로자들의 민원 발생 가능성이 예상되는바, 근로자 전보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각급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채용 등 인사·노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이는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환경개선 및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교육청 차원에서는 학생수 감소, 교육수요의 변화 등에 따라 탄력적이고 유연한 인력 운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조례 시행 전까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및 세부지침 마련을 위해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정원관리, 업무량분석, 추가재정부담, 전담부서의 인력확보 등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신중한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조례안 3페이지에 보면 교육훈련이 있는데 이전에도 교육훈련을 실시하였는지

(답변) 정기적으로 실시하였음

#### 5. 토론요지

- 가. 찬성 : 최용덕, 박종우, 이강호, 구재용, 박승희, 이영환, 제갈원영 위원
- 나. 반대 : 없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8. 기타사항

○ 없음

- 붙임 : 1.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2. 관련법령 발췌사항 1부. 끝.

## 【붙임 1】

#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각급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채용 등 인사·노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기관"이란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공립학교를 말한다.
2. "공립학교"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의 공립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의 공립학교를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교육공무원법」 제32조의 기간제 교원
2.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3.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4. 그 밖에 법령, 지침 및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근로자

**제4조(정원)** 교육감은 각급기관의 필요 인력과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자의 정원을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채용) ① 교육감은 각급기관의 근로자를 채용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급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전보) 교육감은 근로자의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하여 각급기관 간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조(교육훈련) 교육감은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복무 등) 교육감은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복무, 보수 등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한다.

제9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 등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채용된 근로자는 이 조례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붙임 2】

관련법령 발췌사항

관련법령	<p><input type="checkbox"/> 유아교육법 제7조(유치원의 구분)</p> <p><input type="checkbox"/> 초·중등교육법 제3조(국립·공립·사립 학교의 구분)</p> <p><input type="checkbox"/>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p> <p><input type="checkbox"/>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p> <p><input type="checkbox"/>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등)</p> <p><input type="checkbox"/> 유아교육법 제23조(강사등)</p>
------	--

## 【관련법령명】

### ■ 유아교육법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3.24>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 ■ 초·중등교육법

제3조(국립·공립·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설립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12.30>

1. 국립학교: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
2. 공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학교: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2.3.21]

###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

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8.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1. 교원이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3.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임용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③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7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 제75조, 제76조, 제78조, 제78조의2, 제79조, 제80조, 제82조, 제83조 및 제83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④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준용한다. <개정 2012.1.26>

[전문개정 2011.9.30.]

## ■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①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교에 제19조제

1항에 따른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공립 학교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3.21]

## ■ 유아교육법

제23조(강사 등) ①유치원에는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외에 강사, 기간제 교사 또는 명예교사 등을 두어 유아교육을 담당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공립 유치원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0.3.24, 2011.5.19, 2012.1.26>

②제1항에 따라 유치원에 두는 강사 등의 종류·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24>